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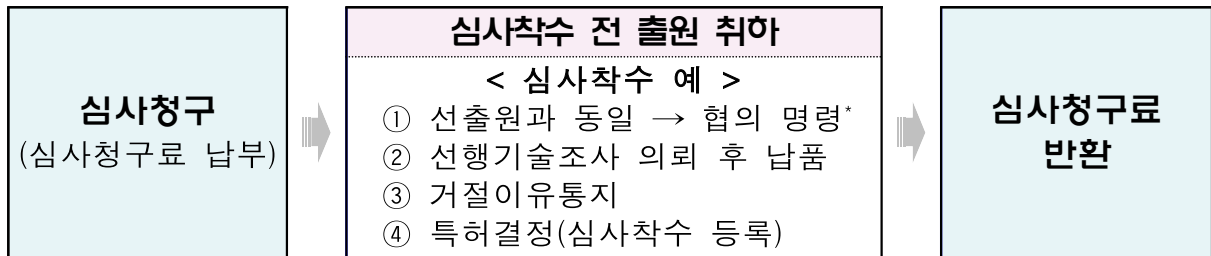
## 개정 특허법(법률 제13317호) 주요 내용

### □ 심사착수전 심사청구료 반환(제84조제1항제5호 신설)

※ 실용신안법: 제5조 삭제 후 특허법 제30조 준용 규정

- (개정 내용) 심사 착수(선행기술조사 납품 포함) 전 출원 취하·포기 또는 취하간주\* 시 심사 착수 관련 행정 비용이 없으므로 심사청구료 전액 반환

- \* ① 국내우선권주장의 선출원인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경과 후 취하간주
- ② 변경출원(특허→실용신안 등)의 원출원인 경우 변경출원 시 취하간주



\* 동일 출원인에게 협의명령한 경우로 한정

- (적용 대상) '15.5.18. 이후 최초로 특허출원을 취하(취하간주 포함) 하거나 포기하는 것부터 적용